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147
----------	-----

발의연월일: 2023년 9월 5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이은미, 박춘희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행사에 대한 조례안 적용범위(안 제3조)
-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수립·시행 준수 책무(안 제4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안 제5조)
- 행사장소 안전점검 실시(안 제6조)
- 주최자 등에게 협조 요청 및 경찰서장 등 지원요청(안 제7~8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3. 8. 7. ~ 2023. 8. 27.(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3. 7. 27.~ 2023. 8. 4. 아래표 참조.

조례안	검토안(안전교통과)	의회 의견
<p>제5조(안전관리계획의신고의무 등)</p> <p>① 다음 각 호의 ----- 행사개최 <u>7일 전까지</u>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u>군수에게</u>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u>3일 전까지</u> <u>군수에게</u>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8호</p>	<p>① 다음 각 호의 ----- 행사개최 <u>14일 전까지</u>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u>재난부서의 장에게</u>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u>7일 전까지</u> <u>재난부서의 장에게</u>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7호 변경없음 <u>8호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 (추가)</u> 9호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수 용] (제5조제1항 안전관리계획 신고대상 군수부분 제외)</p>
<p>제7조(재난예방 조치 등)</p> <p>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 행사를 금지시킬수 있다. 1호, 2호</p>	<p>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호 변경없음 <u>2호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추가)</u> 3.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p>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

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최·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나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 사항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
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그 주변시설
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
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8조(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의원 등에 응

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개정 2017. 1.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법 제66조의11 제1항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 제1항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본조신설 2014. 2. 5.]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5. 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김광성의원
연락처	(033) 330 -2506